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규정상 용어 정의

2003.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본 자료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규정상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는 계속 수정·보완하여 서비스할 예정이오니 문화콘텐츠산업 법·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 진단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정책개발팀 이강훈 연구원 (02)2166-2064, orobas@kocca.or.kr

정미경 과장 (02)2166-2071, cmk@kocca.or.kr

I.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규정상 용어 정리(가나다 순)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간행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
게임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다만, 다음 각목의 것 제외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게임제공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공동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공동제작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공연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시행일 2000·7·1]]
	공연법 제2조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극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
공연자	공연법 제2조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
공연장	공연법 제2조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표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기술적보호 조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온디콘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
기타영상물	영상진흥기본법시행 령 제2조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필름영상물) 내지 제3호(디스크영상물)외의 것
노래연습장 업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단편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
디스크영상 물	영상진흥기본법시행 령 제2조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디지털문화 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 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조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 제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 제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문화산업단 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문화산업전 문투자조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
문화산업진 흥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
문화상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1	1. 공연시설 가.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문화시설의 종류) (계속)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1	<p>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화랑 라. 조각공원</p> <p>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나. 문고</p> <p>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5.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p> <p>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p>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발행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방송	저작권법 제2조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
	방송법 제2조	<p>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p> <p>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p> <p>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p> <p>다.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p>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방송사업	방송법 제2조	<p>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p> <p>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p> <p>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p> <p>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p> <p>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p>
방송사업자	저작권법 제2조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방송법 제2조	<p>다음 각목의 자</p> <p>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p> <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p> <p>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p> <p>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p>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p>
배포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복제	저작권법 제2조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복합유통·제공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음반등 배급업) 내지 제11호(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
비디오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
비디오물대여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품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
상영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선전물	공연법 제2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
소형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실연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
실연자	저작권법 제2조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애니메이션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
연소자	공연법 제2조	18세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영상물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제2조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기타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
영상제작자	저작권법 제2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
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
영화산업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연장")을 제외
영화상영관 경영자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
영화업자	영화진흥법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인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
외국간행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
외국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유통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유통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회사
유해간행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
음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저작권법 제2조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음반등배급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등제작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등판매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음반제작자	저작권법 제2조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
음악유선방송	방송법 제2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
인쇄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
인쇄문화산업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
인쇄사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
인증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제5조	<p>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 <p>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편집저작물)	저작권법 제6조	①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전송	저작권법 제2조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전용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전체관람가) 내지 제3호(15세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자출판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	이 법(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
정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정보보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
정보자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
정보통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정보통신산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정보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제작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특정목적을 위하여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
제작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
제한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지식산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청소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만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함.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p>청소년 유해업소 (계속)</p>	<p>청소년보호법 제2조</p>	<p>(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p>
<p>초고속정보 통신기반</p>	<p>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p>	<p>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p>
<p>출판</p>	<p>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p>	<p>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p>
<p>출판문화산 업</p>	<p>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p>	<p>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p>
<p>출판사</p>	<p>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p>	<p>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p>
<p>컴퓨터프로 그램</p>	<p>저작권법 제2조</p>	<p>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p>
<p>콘텐츠</p>	<p>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p>	<p>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p>
<p>테이프영상 물</p>	<p>영상진흥기본법시행 령 제2조</p>	<p>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p>

구 분	근 거 법	개 념 정 의
통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우편물 및 전기통신
표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등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되는 것
필름영상물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제2조	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한국영화	영화진흥법 제2조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

II. 문화산업의 특성에 관한 법적 규정 (산업분류, 세제, 벤처, 병역, 방송, 납본)

1. 문화콘텐츠산업의 산업분류에 따른 지원

□ 문화산업의 범위

구분	항목명(KSIC)
출판산업	출판업(22110, 22121, 22122, 22123, 22139, 22190))
	인쇄업(22211, 22212, 22219)
	서적, 잡지 및 신문 유통업(51463, 52621, 52892, 71302)
음반산업	음반 제작 및 복제업(22131)
	음악 출판업 및 저작권 관리업(22110, 65999, 87312, 22300)
	음반 유통업(51471, 52513, 71301, 88913)
게임산업	게임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36943, 72201, 22300)
	게임 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통업(51473, 52643, 51891, 52513, 71301)
	오락장 운영업(88911, 88912)
영화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87111, 87112, 87113)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87120)
	기록매체 복제업(22300)
	영화 및 비디오물 배급 및 유통업(87130, 51471, 52513, 7130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87141, 87142)
방송업	공중파 방송업(87211, 87212, 87114)
	유선 및 위성 방송업(87221, 87222, 87223)
공연산업	공연시설 운영업(87311)
	공연단체(87321, 87322, 87329)
	지역 예술가(87331, 87332)
	공연관련 산업(87341, 87342, 87349)
기타 문화산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74311, 74312)
	사진촬영 및 처리업(74911, 74912, 74913)
	전문디자인업(74601, 74602, 74603, 74609)
	광고업(74510, 74591, 74592, 74593)
	공예품 및 한복제조업(20293, 26211, 28999, 36122, 36910, 36941, 36973, 18130)
	공예품 및 한복 유통업(51109, 51473, 51417, 52661, 52662, 51413, 52412)
	뉴스제공,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88100, 88211, 88221, 88222, 88992, 88919, 75994, 75995, 74991)
	(예술 및 문화부분)교육서비스업(80301, 80302, 80303, 80992)

* 자료: 통계청의 문화산업 특수분류표를 이용하여 작성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2000년)에 의하면 대분류상 15~37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50~52는 도소매업, 72~75는 사업서비스업, 87~88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예를들어, 음반제작 및 복제업(22131)은 제조업으로 포함되어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등)
-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87111, 87112, 87113)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중소기업 분류에 따른 혜택

-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0)에 해당하는 부분뿐임
-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만을 특정하여 조세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관련된 조세지원을 받고 있음

1. 부가가치세법현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 ①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
- ②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 ③통신에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
- ④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 ⑥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 시행령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①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
- ②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 ③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 ④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시행령 제 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⑤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

⑥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 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기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1.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

광유홍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홍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현황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7. 영사기와 콤팩트카메라(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4. 벤처기업인증시 세제지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다. 다음 각각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문화산업 병역지정업체 관련법 현황

□ 병역법 제2조 (정의)

- 14. "지정업체(指定業體)"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 병역법 제36조 (지정업체의 선정등)

-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병무청장은 군소요(軍所要)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분야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광업분야 : 광물(석탄을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분야 :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5. **수산업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6. **해운업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선박관리업체**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5. 27>

1. 방위산업연구기관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 3. 27>

6. 방송편성비율 관련 현황

□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80

2.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1.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 가. 영화 :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 나. 애니메이션 :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 다. 대중음악 :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이하
2.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의 경우
- 가. 영화 :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 나. 애니메이션 :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60이하
- 다. 대중음악 :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이하
- ③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월간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④ 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7. 문화콘텐츠 납본제도 관련 현황

□ 영화진흥법 제2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 ① 영화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② 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및 대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2.1.26>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자료의 제출)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제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자료제출의 절차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